

■ 주요 업무 사례 ■

회사가 법인경비 부당 사용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해외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학력 허위 기재, 법인차량 부당매매 및 사적사용, 법인경비 부당사용, 이중장부 작성과 허위 경리보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노동위원회 과정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위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경비 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본소 및 반소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한 비용 중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비용만을 특정하여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회사 승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권영환 변호사



신혜주 변호사